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 및 각 시·도 단위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가보훈처차장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5조제4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법 제5조제4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해촉·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대표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수익은 그 국유·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u><신 설></u>	제6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u>7. 고용노동부차관</u> <u>8. 국가보훈처차장</u> <u>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u> <u>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u> <u>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5조제4</u> <u>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u> <u>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u> <u>다.</u> <u>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법</u> <u>제5조제4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u> <u>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u> <u>(解囑)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u> <u>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u> <u>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u> <u>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u> <u>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u> <u>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u> <u>고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u>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
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
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
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⑨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

	<u>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u> <u>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u> <u>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u> <u>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u> <u>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⑪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u> <u>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u> <u>원장의 임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u> <u>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u> <u>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u> <u>해촉·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u> <u>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u> <u>다.</u>
<u><신 설></u>	<u>제6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u> <u>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① 법</u> <u>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공공</u> <u>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u> <u>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u> <u>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u> <u>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u> <u>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u> <u>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u> <u>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1.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대표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대표
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
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
는 사람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
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u>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u> <u>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④ 시·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u> <u>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u> <u>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u> <u>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u> <u>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u> <u>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u> <u>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u> <u>하지 아니하다.</u>
제7조(생략)	제8조 (<u>현행 제7조와 같음</u>)
제8조(생략)	제9조 (<u>현행 제8조와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33